

사채청약서

채권명칭	제1회 주식회사 고비즈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		
청약금액 (청약증거금)	최소단위 금 500,000 원		
청약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하며, 청약증거금은 납입기일에 사채납입금으로 대체 중당됩니다.

본 청약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청약합니다.

년 월 일

청약자 (인)

■ 일괄등록에 관한 사항

- 상기 본인은 본인에게 배정된 채권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09조 제5항에 의거 일괄등록 발행에 동의(신청)하여 아래의 사항을 기재합니다.

거래증권회사명		거래증권회사 계좌번호	계좌명
---------	--	----------------	-----

<예탁자입고지원서비스> 이용시 발행회사 및 예탁자의 사정에 따라 입고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사채청약서 기재사항

1. 회사의 상호 : 주식회사 고비즈
2. 자본과 준비금의 총액 : 192,300,000원
3. 최종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 : 115,075,293원
4. 사채의 명칭 : 제1회 주식회사 고비즈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
5.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
6. 사채의 발행예정가액 : 220,000,000원. 다만, 청약결과 청약금액이 모집금액 220,000,000원의 80%에 미달할 경우 발행하지 아니한다.
7. 사채발행가액 : 금0000만원(W00000000원)
8. 각 사채의 금액 : 1구좌당 10만원이며, 최소 5구좌 이상만 투자 가능하다.
9. 사채의 이율 :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각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 표면금리 연 5%, 만기수익률은 연복리 5%로 한다.
10.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3년 09월 06일 권면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1.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이자지급기일은 매년 09월 06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잔액에 제9호 표면금리 이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후급하고, 실제 경과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각 이자기간의 초일은 산입하고 말일은 불산입한다. 이자계산시 원단위 미만은 절산하다. 단,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1년 09월 06일에 본 사채의 권면 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연복리 5%)로 일할 계산한 이자(해당기간동안 기 지급된 표면이율에 따른 이자는 공제함)를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채의 일부 혹은 전부가 조기 상환되더라도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 및 행사 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1) 조기상환 청구금액 : 권면금액의 100.0000%
-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주식회사 고비즈 본점
-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IBK기업은행 판교테크노밸리지점
- (4)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주식회사 고비즈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 (5) 조기상환 청구절차 :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며,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 및 등록필증 등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한다.

13. 자금의 사용용도 : 운영자금

14. 미상환사채금액 : 해당사항 없음

15. 청약기간 : 2018.04.30 ~ 2018.08.27

16. 본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 : IBK기업은행 판교테크노밸리지점

17.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장소 : IBK기업은행 판교테크노밸리지점

18. 만기일 : 2023.09.06

19. 납입기일 : 2018.09.06

20. 발행일 : 2018.09.06

21. 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22. 이사회 결의일 : 2018.04.16

23.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1) 신주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식회사 고비즈 기명식 보통주식
- (2) 행사비율 : 사채의 권면금액을 아래의 행사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신발행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3) 행사가액 : 금 8,000원
- (4)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납입 또는 대용납입
- (5) 주금납입은행 : IBK기업은행 판교테크노밸리지점
- (6) 행사가액의 조정

가.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행사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하며, 그 조정일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 발행일로 한다. 단, 조정 후 행사가액이 액면가액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X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X 1주당 발행가액 / 시가)/(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나. 타사와 합병 시 합병비율 산전을 위한 1주당 평가가액이 그 당시 본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본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평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한다.

다. 신주인수권의 일주당 행사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연계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한 경우 본 신주인수권의 행사 가격을 그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한다.

라. 주식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본 계약에 따른 신주인수권증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 직후 신주인수권 권리자가 기존에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로 행사주식수가 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호에 따른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마. 임직원을 위한 스탁옵션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해 행

사가액을 조정한다.

○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격 X 기발행주식수)/(기발행주식수 + 스탁
옵션 발행주식수)

바. 상장 또는 등록등의 방법으로 공신력이 있는 주식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는 경우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자와 합의를 통해 행사가격 조정 시기 등을 결정한다.

- (7) 권리행사기간 :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하는 2019년09월06일 부터 만기일 1개월 전인 2023년08월06일 까지로 한다. 전환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 (8) 권리행사장소 :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 (9) 권리행사절차 및 방법 : 소정의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 2통에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의 범위, 행사청구 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등록기관으로부터 채권자 확인을 받은 등록필증과 함께 권리행사 청구장소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 (10) 권리행사의 효력 발생시기 : 위 권리행사 청구장소에 신주인수권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신주인수권행사에 의하여 교부된 주식은 행사청구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 (11) 권리행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방법 및 장소 : 권리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발행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권리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행사청구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한다.
- (12) 권리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권리행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행사를 청구한 날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기지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권리행사 청구일까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자지급일의 이자는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 (13) 미발행 주식의 보유 : 발행회사는 권리행사기간 종료 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 권리행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 (14) 권리행사로 인한 증자등기 : 권리행사에 따른 증자 등기는 행사청구일이 속한 월의 말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한다.

(15) 본 계약서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 제516조의 2 내지 제516조의 11 및 등록발행과 관련한 규정을 따른다.

24. 기타사항

- (1) 채권등록발행 통지 및 배정 위임 : 발행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에 '본 사채'의 등록발행 및 배정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주식회사 이안투자에게 위임하며, 이 경우 주식회사 이안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발행회사를 대신하여 채권등록발행 통지 및 배정 업무를 수행한다.
- (2) 청약증거금은 사채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 (3) 이차지급 및 원리금상환과 관련하여 발행사가 상기 정해진 기일에 이차 및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약정 지급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하되,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사채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사채이자율을 적용한다.

주식회사 고비즈

대표이사 유윤기 (인)